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86

발의연월일: 2025. 5. 7.

발 의 자:윤준병ㆍ허성무ㆍ복기왕

박희승 · 송옥주 · 주철현

이원택 • 서영교 • 조계원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, 최근 정부는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인상하여 영세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, 특히 농사용 전력의 전력량요금이 144% 상승하여 여타전력량요금의 인상률보다 높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%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되는데,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반면 전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,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

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).

법률 제 호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농사용 전력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	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		
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	대한 면세) ①		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			
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2의2.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의		
	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농		
	<u>사용 전력</u>		
3. ~ 20. (생 략)	3. ~ 20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